

(유권해석) 봉안시설의 경우도 이전보조비를 지급한다.

[국토부 2010. 10. 29. 토지정책과-5140]

질의요지

납골묘로 매장하여 1기당 약 40×50cm 규모로 12기가 산재된 가족묘를 이전하는 경우 이전보조비 지급기준

회신내용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의하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있는 분묘에 대한보상액은 분묘이전비, 석물이전비, 잡비, 이전보조비의 합계액으로 하되, 이전보조비는 100만원을 보상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납골묘가 1기당 각각 산재하여 매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전보조비도 1기당 각각 산정되어야 한다고 보나, 개별적인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